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375

발의연월일: 2024. 1. 9.

발 의 자:권영진·김상훈·이만희

우재준 · 김소희 · 이양수

김도읍 • 인요한 • 조승환

박형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플랫폼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 여객자동차법에도 플랫폼사업제도가 도입(2021. 4. 8 현행법 개정)된 이후,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형성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택시기사에게 승객의 호출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, 대형 플랫폼사업자가 운송플랫폼 앱을 사용하는 국민과 택시기사로부터 과도한 중개요금을 수취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플랫폼운송중개사업과 같이 여객자동차법으로 허가 및 면허,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 맹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 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 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임. 이에,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여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,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고(안 제49조의20 신설), 개선명령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명령하고(안 제79조),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화된 플랫폼의 불공정 호출료 배분, 배차 등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(안 제85조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2에 제4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20(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)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- 1.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
- 2.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
- 3. 플랫폼중개요금(여객 운송 중개요금 외 부가서비스에 따른 요금을 포함한다)의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등 등록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79조제1항제3호 중 "제49조의14"를 "제49조의14, 제49조의20"으로 한다.

제85조제1항제22호 중 "제23조·제33조·제44조 또는 제49조의7"을 "제23조·제33조·제44조·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0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	제49조의20(플랫폼중개사업의 개
		선명령)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
		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
		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
		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
		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
		<u>할 수 있다.</u>
		1.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
		<u>사항</u>
		2.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
		<u>최</u>
		3. 플랫폼중개요금(여객 운송
		중개요금 외 부가서비스에
		따른 요금을 포함한다)의 조
		<u>정에 관한 사항</u>
		4.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등 등 록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
		사항
		<u>기 8</u> 5.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
		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
		조치
 제79조(보고 ·	검사 등) ① 국토교	제79조(보고·검사 등) ①
·	시·도지사 또는 시	
,	다음 각 호의 어느	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 록 명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23조, 제33조, 제44조, 제49 조의7, <u>제49조의14</u>에 따른 개 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4. ~ 8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85조(면허취소 등) ① 국토교통 부장관, 시·도지사(터미널사업 ·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에 한정한다)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(터미널사업에 한정 한다)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·허가·인가 또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 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

,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<u>제49조의14, 제49조의20</u>
4. ~ 8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5조(면허취소 등) ①

- 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·제8호·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,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~ 21. (생략)
- 22. 제23조·제33조·제44조 또 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 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23. ~ 41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1. ~ 21. (현행과 같음)
22. <u>제23조·제33조·제44조·</u>
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0
23. ~ 4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